



캘리포니아주의 보호 및 주장 시스템

www.disabilityrightsca.org

수신자 부담 전화: (800) 776-5746

TTY: (800) 719-5798

3: 캘리포니아주 수당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한 현황 보고서 – 2009년 8월 6일

SSI 수당이 다시 삭감되고 있습니다

10월 1일부로 저소득층 생활 보조금/주 보충 프로그램(SSI/SSP)의 추가 삭감이 있을 것입니다. 이 전단지에는 그 삭감을 요약한 것입니다.

법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

65세를 넘은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0월 1일부로 SSI/SSP 수당 지급액이 \$5 삭감될 것입니다. 결혼한 커플이 둘 다 65세를 넘거나 장애인인 경우 지급액이 \$82 삭감될 것입니다. 이러한 삭감은 2009년 5월 1일 및 2009년 7월 1일부로 이미 이루어진 삭감에 추가되는 것입니다.

이러한 추가 삭감은 이전 삭감처럼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.¹ 이러한 삭감은 캘리포니아주 입법부가 제정하고 캘리포니아주 지사가 승인하였습니다. 삭감되는 것은 다른 삭감과 마찬가지로 연방 몫이 아닌 주 몫입니다.

사회보장청(SSA)은 이전 삭감에 대해 수혜자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. SSA는 2009년 10월 1일 삭감에 대한 통지서도 발송할 것입니다. SSA가 SSI/SSP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때문에 통지서 발송을 담당하는 것입니다.

¹ 이러한 변경은 2009년 제 4차 특별 회기 상원 법안 4의 일부입니다.

나는 SSI 보조금을 얼마나 받게 됩니까?

개인 및 결혼한 부부의 SSI/SSP 수당액이 금년에 여러 번 삭감되었습니다. 아래의 첫 번째 차트는 개인에 대한 SSI/SSP 수당액 삭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. 두 번째 차트는 결혼한 부부에 대한 수당액 삭감 내역입니다. 굵은체로 되어 있는 차트의 마지막 열은 2009²년 10월 1일부로 귀하의 SSI/SSP 수당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.

SSI/SSP 지급액—적격 개인					
	2008년 12월 1일	2009년 1월 1일	2009년 5월 1일	2009년 7월 1일	2009년 10월 1일
자택에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	\$870	\$907	\$870	\$850	\$845
자택에서 ³ 생활하는 맹인	\$935	\$972	\$935	\$913	\$908*
자택에서 생활하는 18 ⁴ 세 미만 자녀	\$756	\$793	\$756	\$739	\$737*
조리 시설 ⁵ 없는 주택에 사는 사람	\$ 954	\$991	\$ 954	\$934	\$929*

² 귀하의 실제 SSI/SSP 지급액은 차트에 기재된 지급율에서 귀하의 가산 소득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.

³ 18세 미만 맹인 포함.

⁴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18세 미만 미성년 장애인. 맹인 자녀 불포함. 맹인 자녀에 대한 SSP 지급액 수준은 맹인 성인에 대한 수준과 동일.

⁵ 노인/장애인 SSP 수당 + 개인 \$84 및 부부 \$168의 식당 음식 수당(RMA)에 근거함. 2009년 2월 19일 및 2009년 7월 24일자 주 예산 법안은 RMA 금액 \$84 및 \$168를 줄이지 않습니다. 이 액수는 2009년 1월 1일에 늘지도 않았습니니다.

SSI/SSP 지급액—적격 개인					
	2008 년 12 월 1 일	2009 년 1 월 1 일	2009 년 5 월 1 일	2009 년 7 월 1 일	2009 년 10 월 1 일
CCF(기숙 및 간호, 집단 가정) ⁶ 에 사는 사람	\$1,049	\$1,086	\$1,086	\$1,086	\$1,086
장기 간호 시설(요양원, 경간호시설) ⁷ 에 사는 사람	\$50	\$50	\$50	\$50	\$50

⁶ 이것은 커뮤니티 케어 시설, 위탁 가정 또는 인증 가정 같은 주거 케어 시설(기숙 및 케어 시설)입니다. 그것은 의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보건봉사부의 면허를 받지 않습니다. 이 시설들은 기숙 및 간호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SSI 금액의 대부분을 취합니다. 그들은 귀하에게 개인적 및 임시적 경비로서 최소 월 \$125 를 넘겨주어야 합니다. 이러한 타입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위해 SSI 가 지급하는 금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
⁷ 캘리포니아주 보건봉사부의 면허를 받는 보건 시설이 있습니다. 귀하는 개인적 및 임시적 경비로서 월 \$50 를 받습니다. Medicaid 자금을 받는 시설의 요금을 위한 생계비 자동 조정은 없었습니다.

SSI/SSP 지급액—적격 부부					
	2008년 12월 1일	2009년 1월 1일	2009년 5월 1일	2009년 7월 1일	2009년 10월 1일
자택에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 부부	\$1,524	\$1,579	\$1,524	\$1,489	\$1,407
자택에서 생활하는 맹인 부부	\$1,751	\$1,806	\$1,751	\$1,711	정보 없음 ⁸
자택에서 생활하며 한 명이 노인 또는 장애인/ 한 명이 맹인	\$1,666	\$1,721	\$1,666	\$1,628	정보 없음
조리 시설 없는 주택에서 ⁹ 생활	\$ 1,692	\$1,747	\$ 1,692	\$ 1,657	\$1,575¹⁰
비의료 자택외 간호 시설에서 ¹¹ 생활하는 부부	\$2,098	\$2,172	\$2,172	\$2,172	\$2,172
Medicaid 자금을 받는 의료 시설에서 ¹² 사는 부부	\$100	\$100	\$100	\$100	\$100

⁸ 이 액수는 곧 사회봉사부가 공개할 것임.

⁹ 노인/장애인 SSP 수당 + 개인 \$84 및 부부 \$168 의 식당 음식 수당(RMA)에 근거함. 2009년 2월 19일자 주 예산 법안은 RMA 금액 \$84 및 \$168 를 줄이지 않습니다.

¹⁰ 정확한 액수는 사회봉사부가 곧 공개할 것임.

¹¹ 각주 5 참조.

¹² 각주 6 참조.

향후 년도에 **SSI/SSP** 에서 생계비 조정이 자동으로 됩니까?

과거에는 **SSI/SSP** 를 위해 주 및 연방 정부에서 매년 생계비 조정을 자동적으로 하였습니다. 주 정부는 예산 문제가 있을 때 종종 이러한 생계비 조정을 축소하거나 보류하였습니다.

연방사회보장법은 여전히 연방 정부가 **SSI** 를 위한 생계비 조정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. 그러나 2009년 10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주는 이 지급금의 주 몫에 대한 생계비 자동 조정을 제거하였습니다. 이것이 바뀌려면 캘리포니아주 입법부가 향후 년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.

Medi-Cal 자금을 받는 보건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생계비 자동 조정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. 그들은 **SSI/SSP** 로부터 소액의 "개인적 및 임시적" 경비를 받습니다.

SSI 삭감이 집단 가정/기숙 및 간호 가정, 요양원 또는 기타 **Medi-Cal** 자금 수혜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?

아니오, 금액 삭감이 집단 가정/기숙 및 간호 가정, 요양원 또는 기타 타입의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. 이것은 집단 가정/기숙 간호 가정에 사는 사람 및 요양원 또는 **ICF/DD** 같은 기타 유형의 **Medi-Cal** 자금 수혜 보건 시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.

- 집단 가정/기숙 간호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위 차트에 기재된 액수를 줄지 않은 채로 받을 것입니다. 이 금액은 기숙 간호 시설에 지불하는데 사용되며 **SSI** 수혜자에게 직접 지불되지 않습니다. 각주 5 참조.
- **Medi-Cal** 자금 수혜 보건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 및 임시적 경비만 계속 받을 것입니다. 각주 6 참조.

왜 부부에 대한 지급액이 개인에 대한 지급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갑니까?

주지사가 입법부에 **SSI/SSP** 를 위한 주 지급액을 연방 정부가 축소를 허용하는 절대 최소액으로 줄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 캘리포니아주 사회봉사부에 의하면 이것은 65세를 넘거나 장애인인 개인의 경우 \$830 이고 부부 모두 65세를 넘거나 장애인인 경우 \$1,407 입니다. 입법부는 주지사의 요구를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니다. 그 대신 입법부는 개인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\$845(\$830 대신)로 줄이기로 했지만,

부부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최소 한도인 \$1,407 로 줄여달라는 주지사의 제안은 받아들였습니다.

SSI/SSP 삭감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?

사회보장청은 귀하 수표액의 삭감은 귀하 같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 법률의 변경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귀하는 수당에 도전하여 항의할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. 그러나 사회보장청이 축소액을 계산한 방식에 실수를 했다고 생각되면 항의할 권리가 있습니다. 예컨대, 새 법률에 의거 귀하의 SSI/SSP 보조금 삭감액이 \$5 이어야 하는데 귀하의 지급액이 실제로는 \$75.00 가 삭감된 경우 심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
항의하면 초과지불이 될 수 있습니까?

귀하의 수당이 이전 수준(즉, 삭감 전에 받던 액수)에서 계속되도록 요구했는데 항의에서 지는 경우, 초과지불이 됩니다.¹³

초과 지불액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본인의 SSI 수표 금액이 축소되고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됩니까?

귀하가 SSI를 받는 경우 사회보장청은 초과 지불액을 회수하기 위해 귀하의 수표에서 SSI 수당액의 10% 이상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SSI/SSP 지급액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청이 초과 지불액을 회수하기 위해 공제하는 액수도 내려가야 합니다. 사회보장청이 귀하의 수표에서 공제하는 액수는 새 SSI 수당 지급액의 10%로 내려가야 합니다.

이러한 삭감이 제안되었을 때 Disability Rights California(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)는 무엇을 하였습니까?

Disability Rights California(캘리포니아주 장애인 권리 단체)는 이러한 모든 삭감에 반대하였습니다. 그러나 그 삭감은 우리의 반대 그리고 다른 많은 주장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되었습니다. 이러한 삭감이 제정되어 우리는 실망스럽습니다. 그 삭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.

¹³ 20 CFR §§ 416.1402, 416.1403, 416.1401 참조